### 아름다운 생복한 시 입

제2020-2호 2020년 1월 3일(금)





보

### 시 정 지 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0 여수시 고시 제2020-2호

제2020-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3

공 고

O 여수시 공고 제2020-25호 2020년 농촌진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5

O 여수시 공고 제2020-26호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

O 여수시 공고 제2020-34호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4

기 타

회				
람				

여수시 공고 제2020-2호

###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1. 3.

여 수 시 장

- 1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: 여수시 문수동 760-1번지 일원
-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가. 종 류: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393호)사업

나. 명 칭: 문수동 허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

가. 면 적: 467.6m²

나. 규 모: L=75m, B=6m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가. 성 명: 여수시장

나. 주 소: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
- 5. 사업시행기간(변경없음): 2018. 3.26.~2021.12.31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(변경): 붙임
- 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
- 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13) 및 도로과(☎061-659-407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 자의 성명.주소

### ○ 토지조서

~ш	지 번	지목	면적		소	유 자	wl =
순번	시면	시축	대장	편입면적	성 명	주 소	비고
1	760-6	전	351	98.1	정**	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**(문수동)	
2	759-5	대	5	0.5	김**	7**	
3	761-4	대	81.7	23.9	김**	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5나길 *, 비 **호(갈현동)	
4	762-10	대	160.1	0.2	여수시문수동 허문부락새마을회	7**-5	
5	762-9	도	1	1.0	여수시문수동 허문부락새마을회	7**-5	
6	762-11	대	104.8	50.7	김**	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45나길 *, 비 **호(갈현동)	
7	763-6	대	237.2	87.0	오**	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7**-1	
8	763-8	도	23	0.4	조**	동정 7**	기정
9	869-9	도	195	111.7	채**	7**	
10	869-12	전	110	32.4	김**	7**	
11	869-8	대	165	3.5	박**	전라남도 여수시 문수4길 1*-*(문수동)	
12	869-13	도	29	2.1	채**	7**	
13	917-24	도	20	3.8	국	국토교통부	
14	884-12	답	40	20.8	국	여수시	
15	917-21	도	1,631.3	2.9	국	국토교통부	
16	917-23	도		7.3	국	국토교통부	
17	884-11	도	247	21.3	정**	7**	
1	759-5	도	467.6	467.6	공	여수시	변경

○ 지장물 조서(변경없음)

# 농촌진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2020년도 농촌진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3일

여 수 시 장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분야	인원 (명)	근무장소	근 무내 용	비고
1) 농촌진흥사업 활 력 화 지 원 (국비)	1	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	<ul><li>○ 농업기술상담 업무 지원</li><li>○ 농업인교육 프로그램 업무 보조</li></ul>	
2)돌산읍 농업인 상담소 업무지원	1	돌산읍농업인 상담소	○ 농업인상담 업무 보조	근무기간 : 38주
3)귀농귀촌 상담 지원(국비)	2	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	<ul><li>○ 귀농귀촌 종합상담 업무 지원</li><li>○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업무 보조</li></ul>	
4)꽃묘생산 및 가 로화단 조성관리	2	농업기술센터 꽃육묘장	○ 우량 꽃묘 생산관리 ○ 가로화단 조성 관리	근무기간 46주 만 55세 이상만 지원 가능(64. 1. 1. 이전 출생자)

### 2. 근무조건

○ 직 종 : 기간제근로자

○ 급여단가 : 68,720원/일(생활임금 6,880원 별도)

※ 국비사업 1)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3)귀농귀촌 상담지원 기간제근로자는 생활임금 지급 제외

○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 ~ 18:00),

점심시간(12:00 ~ 13:00) 근무시간에서 제외

※ 휴무일 : 매주 토·일요일, 법정공휴일

○ 기타사항: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)가입

- 근무기간
  - 1)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지원 : 2020. 1. 28. ~ 10. 24. (38주)
  - 2) 돌산농업인상담소 지원 : 2020. 1. 28. ~ 7. 5.(23주)/ 9. 21. ~ 12. 31.(15주)
  - 3) 귀농귀촌 상담 지원 : 2020. 1. 28. ~ 10. 24. (38주)
  - 4) 꽃묘생산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 : 2020. 2. 3. ~ 12. 20.(46주)

### 3. 응시자격

○ 공통사항

가. 응 시 연 령 : 만 18세 이상

※ 예외 : 4) 꽃묘생산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 : **만55세 이상**만 지원 가능 (64. 1. 1. 이전 출생자)

나. 거주지제한 : 응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본인의 **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**로 되어 있어야 하며,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.

### 4. 추진일정

- 공고기간 : 2020. 1. 3. ~ 1. 10. (8일간)
- 응시원서 접수기간 : 2020. 1. 13. 09:00 ~ 1. 15. 18:00 (3일간)
  - ※ 제출서류 : 응시원서, 이력서, 주민등록등본, 기간제근로사실 확인서, 자격증(원본) 등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2020. 1. 16.(목)
- 면접심사 : 2020. 1. 20.(월) 10:00
- 최종 합격자 발표 : 2020. 1. 22.(수) / 개별통보

### 5. 전형방법

- 1차시험 : 서류전형
  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
- 2차시험 : 면 접
  -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및 예의·품행·성실성 등 업무수행 자로서의 정신자세 심사
  - 2차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
### 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소정양식) 1부 ※ 사진 2매(3.5×4.5cm) 첨부
- 이 력 서 1부
- 주민등록등본·초본 각1통
- 자격증(원본) 1부 ※ 해당자에 한함
- 기간제근로자 근무사실확인서 1부
  - ※ 여수시청 근무자에 한함(근무처 과・읍・면・동에서 확인 받아 제출)
-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.

### 7. 접수기간 및 접수처

- 접수기간 : 2020. 1. 13. ~ 1. 15. (3일간) / 09:00 ~ 18:00
- 접 수 처 :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(여수시 주동1길 32(주삼동))
  - 1)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: 농촌진흥팀 ☎ 659-4463
  - 2) 돌산농업인상담소 업무지원 : 농촌진흥팀 ☎ 659-4463
  - 3) 귀농귀촌 상담 지원 : 귀농귀촌팀 ☎ 659-4452
- 접수방법 : 제출서류 구비 본인 직접 방문접수(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)

### 8. 면접일시 및 장소(예정)

- 일 시 : 2020. 1. 20.(월) 10:00
- 장 소 : 추후 공지
- 대 상: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- 면 접 관 : 위원 3명
- 준 비 물 : 응시표, 신분증
- ※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농촌진흥과로 응시접수

### 9. 심사방법

- 심사위원 구성 : 내부위원 3명
- 심사내용 : 면접시험 심사표에 의거 질문 및 답변 후 평정

### 10. 합격자 발표(예정)

- 일 자 : 2020. 1. 22.(수) / 개별통보
- 최종합격자 결정 : 심사표에 의하여 종합점수 최고 득점자 순으로 결정

### 11. 유의사항

-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 시자의 책임임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 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.
- 응시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.
- 공고내용 등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여수시의 해석에 따르며, 개인 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농촌진흥과 농촌진흥팀(☎061-659-4463)으로 문의

### 【붙임 1】

# 응시원 서

※ 응시번	호				응시	분야	*	4분야	중 히	나만 선택	사 진 (1)
성 명					생년	월일					6개월이내 촬영 상반신 사진
현 주 소					① 연 락 처		(전화)			(3.5×4.5cm)	
せ 下 公						연 락	처	(H.P)			
2		햣고	<u>1</u>	과(*	전공)				년	월(졸업, 졸	업예정)
최종학력		학교	<u>1</u>	대호	<b>ት</b> 원		전공		년	월(졸업, 졸	업예정)
		기간		직장명				직	위	담당업무	
③ 주요경력											

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, 허위 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0년 월 일

응시자 (인)

여 수 시 장 귀하

	성		※ 응시번호	
90	명		응시분야	
시	생년월일			
丑		2020 역	<sup>년 월 일</sup> 수 시 장	

##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<뒷면>

- 1.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은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.
- 2. '응시원서'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.

### 【 작성요령 】

- ① 연락처: 상시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
- ② 최종학력
  - 졸업연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,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으로 전공구분이 없을 경우 전공은 기입하지 않아도 됨
- ③ 주요경력: 근무경력
- (※) 표시가 되어 있는 응시번호 란은 기재하지 않음

#### 【 붙임서류 】

- 1. 주민등록초본 1부(필수)
- 2. 경력증명서 각 1부(경력보유자, 경력별 각 1부)
- 3. 자격증 사본 각 1부(원본제출, 자격별 각 1부, 해당자에 한함)
  - ※ 붙임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

### 【붙임 2】

#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

(1쪽)

<필수>							
성 명	(한글)						
주 소 (현거주지)	(우편번호)						
연락처	전화번호	(전화)		(휴대전	화)		
	전자우편						
	회사명	담!	당 업무(직무내용)		근무	·기간(연, 월)	
주 요					년	월 ~ 년	월
경력사항							
	자격종목	자격증번호				취 득 일	
				(	년	월 취득)	
				(	년	월 취득)	
자격증				(	년	월 취득)	
및 특기사항	(기타실적, 능력 등)						
	장애 종별	<u> </u>	등급		장애인등록번호		
장애인 여부							
취업대상자 및	취업지원대	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싱 수급자		「한누		 」 상
취입내장사 및 저소득층 여부	( — L L X -	10/	10.1			— <u> </u>	

# 자기소개서

(2쪽)

○ 주요내용 <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,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, 성장과정, 좌우명,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, 자신의 생각 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>				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				
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(감점)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	

#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

본인은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, 제2항」에 따라 (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)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.

제공받는 기관	여수시
이용 목적	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
제공 항목	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등록기준지 등
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동의서 작성일로부터(2년)
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	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	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 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

2020. . .

성 명 (서 명)

여수시장 귀하

여수시공고 제2019-26호

『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#### 2020년 1월 3일

## 여 수 시 장

## 「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### 1. 개정 이유

-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중장년의 고용 확대 기반조성을 위한 제 도적 근거 마련
-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조기 퇴직하는 40세 이상의 중년층에 대한 시 차원 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 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 내용

- **용어의 정의 개정** (안 제2조 3호)
  - 중장년층의 정의를 "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"에서 "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"으로 개정
- 중장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근거마련 (안 제4조)
  - 지원대상을 "중장년층 주민"에서 "중장년층"으로 변경하고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 신설하여, 주민에 한정한 지원근거를 변경하고 기업의 중장년층 고용 촉진
- 불분명한 조항 개정 (안 제7조제1항)
  - "제2조제2항 각호의"에서 "각호의"로 변경

- **용어의 통일** (안 제8조제1~2호 및 제9조제2항 2호·4호)
  - "중·장년층 주민"에서 "중장년층"으로 용어를 통일
- **타 법령에 의한 개정** (안 제9조제2항)
  - "시장이 위촉한다"에서 "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"로 개정

#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3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인구일자리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061) 659-3621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의견 제출 사항
  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  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  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제출의견 보내실 곳
  - 가. 일반우편 : 우)59715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(오림동)

여수시장(인구일자리과장)

나. 전자우편: jongjun@korea.kr / - 팩스: 061) 659-5819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(☎061) 659-3621), 팩스 (061) 659-58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「여숙	수시 인생이모작	지원에 관한	조례 일부개	정조례안
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그게이 되므버 게 0	찬성여부		이러(기 이	기타	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	반대	의견(사유)	참고사항	

#### 여수시 조례 제 호

###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50세 이상"을 "40세 이상"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"(지원사업 및 대상)"을 "(지원사업)"으로 하고, "중장년층 주민"을 "중장년층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,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고용기획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
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제1항 중 "제2조제2항 각호의"를 "각 호의"로 한다.

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"중·장년층 주민"을 "중장년층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시장이 위촉한다"를 "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의 "중·장년"을 "중장년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(생 략)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
제2조(용어의 정의) (생 략)	제2조(용어의 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중장년층이란 <u>50세 이상</u> 65세 미만의	2 40세 이상
주민을 말한다.	<u>.</u>
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 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(현행과 같음)
제4조( <u>지원사업 및 대상</u> ) 시장은 <u>중장년층</u>	제4조( <u>지원사업</u> ) <u>중장년층</u>
<u>주민</u> 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고용 기회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한
	<u>사업</u>
<신 설>	5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</u> <u>사업</u>
제5조(재정지원) (생 략)	제5조(재정지원) (현행과 같음)
제6조(지원시설) (생 략)	제6조(지원시설)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탁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	제7조(위탁) ①
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<u>제2조제2항 각</u>	각 호의
<u>호의</u>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	
단체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	
있다.	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) (생략)	제8조(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) (현행과 같음)
1. <u>중·장년층 주민</u> 에 대한 인생이모작	1. <u>중장년층</u>
지원을 위한 지원(시행)계획의 수립에	
관한 사항	
2. <u>중·장년층 주민</u> 에 대한 인생이모작	2. <u>중장년층</u>
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	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	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 업무	②
담당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	
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<u>시장이</u>	<u>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</u>
위촉한다.	<u>위촉한다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중·장년	2. 중장년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중·장년	4중장년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
- 1. (생 략)
- 2. (생략)
- 3. (생략)

제10조(위원회의 회의) (생 략) 제11조(위원의 제착·기피·회피) (생 략) 제12조(시행규칙) (생 략)

부칙(2017. 11. 22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의 회의) (현행과 같음) 제11조(위원의 제착·기피·회피)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

부칙(2017. 11. 22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여수시 주민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
  - 2.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·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.
  - 3.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은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 - 1. 직업훈련, 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
  - 2.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
  - 3.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
  - 4. 고용 기회 확대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(추가)
 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(추가)
- 제5조(재정지원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,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  - ④ 재정지원의 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등 재정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6조(지원시설)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제7조(위탁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
  -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감사할 수 있다.
- 제8조(인생이모작 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인생이모작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1.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지원(시행)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- 2. 중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② 당연직 위원은 인생이모작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
    - 1. 여수시의회 의원
    - 2.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   - 3.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
    - 4. 그 밖에 중장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 -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대행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 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- 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    - 1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
    - 2.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

- 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
- 제10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다.
 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인생이모작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- 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.
  -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  - 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2017. 11. 22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공 고

『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. 1. 3.

### 여 수 시 장

###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취지

O 우리시 인구 유출이 높은 젊은 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 정적인 주거 정착을 유도하여 결혼 및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여수 시 인구시책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O 정의 내용 추가(안 제2조)
  - 신혼부부 신설
- O 지원대상 추가(안 제3조)
  - 지원대상 중 "신혼부부" 조건 추가, 조건의 구체적 명시
- O 지원내용 추가(안 제4조)
  -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 추가
- O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(안 제7조)
  - 신혼부부가 타 시군구 전출 및 이혼한 경우 지원 중단 내용 추가

- 3. 개정조례안 : 별첨
- 4. 입법예고 기간 : 2020. 1. 3. ~ 2020. 1. 23.(20일간)

### 5. 의견 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인구일자리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☎061)659-3426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의견 제출 사항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다. 기타 참고 사항 등

### ○ 의견 제출할 곳

가. 주 소 : 우)59715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

나. 받는 사람 : 여수시장(참고 : 인구일자리과장)

다. 전화번호 : 061)659-3426, 팩스 061)659-5819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		조례명 : 여수시	인구시책	지원	조례	일부개정	조례인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	------	----	----	------	-----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ગાંદી એન્યોરી	
소데안 양곡별 내용	찬성	반대	의선(작市)	기타 참고사항	

### 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여수시 인구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7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"신혼부부"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.

제3조 제7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7. 신혼부부

- 가.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초혼인 부부
- 나.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
- 다.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제4조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신혼부부 지원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급

제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조제7호의 신혼부부가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전출 등으로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
1.~ 6.(생략) < <u>신</u> 설>	1.~ 6.(현행과 같음) 7. " <u>신혼부부"란 혼인신고 후 5년이내</u> 의 부부를 말한다.
제3조 (지원대상) 인구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 와 같다. 1.~ 6.(생략) <신 설>	제3조
제4조(지원내용) 여수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.)은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 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다.	록을 두고 거주 제4조(지원내용)

1. ~ 5.(생략)

<신 설>

제7조(지원중단 및 환수조치)

① ~ ③(생략)

<신 설>

6. 신혼부부 지원 사업 : 주택 전세자 금 대출이자 지급

제7조(지원중단 및 환수조치)

- ① ~ ③(현행과 같음)
- ④ 제3조제7호의 신혼부부가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전출 등으로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지 않은 경우